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 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5. 5.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5월 1일 영등
포구청장제출

나. 회부일자 : 1995년 5월 15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33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제1
차 행정재무위원회(1995년 5월 23일) 상정의
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윤정중)

가. 제안이유

○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를 정
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보
건소장, 동장 또는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는 위임.

- 위임사무 : 총 14개(기위임 : 12개 - 신규위임 2
개) -

2) 기위임사무중 기관위임(재위임)사무 제외
: 총 20개

3) 위임환수 사무 : 2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허영훈)

지방자치법중 개정되기 전의 법 제95조(사무위임
등)에 의하여 단체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
관에 위임할 경우에는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개정 '94. 12. 20 법률 제
4789호)과 관계규정의 개정으로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위임사무)는 조례로 제정위임하고 서울특
별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재위임사무)는
규칙으로 제정하여 위임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

정하는 것과(조례→규칙이관 20개 사무)

2) 현재 실질적으로 장묘사업소에서 처리하는
시체매장(화장, 개장) 신고사무와 위임이 불필요
한 독극물판매업에 관한 사무는 환수조정하고,
3) 그간 내부위임사항으로 처리하던 치과기공시
설의 인정, 인정취소 및 업무정지사무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무를 새로
이 보건소장에게 권한위임하여 14개 사무로 통·
폐합 조정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4. 審査結果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 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7
----------	-----

제출년월일 : 1995. 5.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를 정비하
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
또는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
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
는 위임(안 제2조)

○ 위임사무 : 총 14개(기위임 : 12개 신규위임 2
개) (안 별표)

※ 기위임 17개사무를 12개사무로 통합조정 -
(안 별표 제1호, 제7호)

나. 기위임사무중 기관위임(재위임) 사무 제외 :
총 20개

다. 위임환수 사무 : 2개(현행 별표 중 제4호, 제25
호)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9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주관부서 의견반영

첨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
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
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
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
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보건소장·동장 및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의 기준등) ①구청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
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
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
을 얻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5조(위임사무) ①구청장이 보건소장·동장 및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
다.

②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
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위 임 사 무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1. 인장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인장업 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 나.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다. 폐업신고의 수리	인장업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령 제3조 동법시행령 제4조	동 장
2.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보임용해제포함),의원면직 나. 7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전 보 다. 소속공무원에 대한 승급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30 조의 5, 제63조, 제65조, 제 27조,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30 조의 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26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 조	구 의 회 사 무 국 장 보 건 소 장 구 의 회 사 무 국 장 보 건 소 장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3. 건축신고의 수리(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경미한 용도변경, 연면적의 합계가 85㎡이하인 단독주택, 건축물의 높이를 3m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동 장
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건축법 제15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5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동 장
5. 용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다만, 미관지구내의 행위제외)	건축법 제72조, 동법시행령 제118조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동 장
6.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의 수리	건축법 제27조	동 장
7.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약국개설 등록 및 변경사항 등록 나. 약국관리약사 승인, 변경 및 폐지신고 수리 다. 폐업, 휴업 및 재개업 신고의 수리 라. 약국제재의 제조품목신고 및 변경·폐지신고 수리 마. 지도감독(보고와 검사 등, 폐기, 개수, 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바. 허가증, 등록증의 갱신, 재교부 사.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	약사법 제16조 동법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84조 동법 제20조 동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동법 제64조 내지 제65조 동법 제67조 내지 제69조 동법 제71조의 2 동법 제71조의 3, 제79조	보 건 소 장
8. 의료용구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료용구판매업 등록 및 변경사항 등록 나. 지도감독(보고와 검사 등, 폐기, 개수, 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다. 과태료부과	약사법 제42조 동법 제64조 내지 제65조 동법 제67조 내지 제69조 동법 제79조	보 건 소 장
9.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설신고의 수리 나. 변경신고의 수리 다. 휴업·폐업 신고의 수리 라. 의료기관감독(지도와 명령, 보고와 업무감사 등, 개설허가의 취소 등, 과징금, 과태료 처분 등)	의료법 제30조 제3항 동법 제30조 제6항 동법 제33조 동법 제33조 동법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의 2, 제72조	보 건 소 장
10.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	의료법 제31조 본문	보 건 소 장
11. 안마시술소·접골소·침구시술소 개설신고의 수리	의료법 제60조, 제62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제17조 안마사에 관한규칙 제12조	보 건 소 장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12.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설등록 신청 등 나. 휴업·폐업 등의 신고 수리 다. 보고의 징구와 검사 등 라. 개설등록의 취소 등 마. 과태료 부과징수	의료기사법 제13조의 4 동법 제13조의 5 동법 제13조의 6 동법 제13조의 7 및 제13조의 8 동법 제17조의 3	보 건 소 장
13. 치과기공시설의 인정, 인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의료기사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보 건 소 장
14.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고 나. 지도감독	의료법 제32조의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3조 동규칙 제16조 제1항	보 건 소 장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5. 5. .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5월 17일 영등포구청장제출
나. 회부일자 : 1995년 5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33회 영등포구의회(임사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1995년 5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윤정중)

-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부칙('94. 3. 16) 제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확정되고
○ 지방자치단체장이 현행 일반직 공무원에서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바뀔에 따라 정원 규정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구청장이 당초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에서

지방정무직으로 변경

○ 구 본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허영훈)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반직 국가공무원에서 단체장선거에 따라 '95. 7. 1부터 지방정무직공무원으로 바뀌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480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원승인이 시정 12200-331('95. 5. 13)호로 통보되었기에 현행 영등포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중 제1호 구 본청 정원의 총수를 974명에서 975명으로 조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